

「2022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실시계획」

1. 재입학 신청기간 : 2021.12.01.(수) ~ 2021.12.23.(목)

2. 신청 대상자

구분	신청 가능 여부
자퇴·미등록·휴학 만료자	제적된 날로부터 바로 신청 가능
학사경고 제적자	제적된 날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(ex. 2021-1학기 학사경고 제적자는 2022-2학기 모집(2022.06.월)부터 가능)
학사경고 제적→재입학→학사경고 제적자	시간제등록으로 학과 지정과목 이수(평점 2.0이상) 후 재입학 신청 가능

3. 신청 절차

순번	절차
1	포털(학사 서비스) → 학적 → 재입학 신청 → 신청완료
2	신청인료된 서류를 '출력'하여 재입학원서, 학업계획서에 성적증명서를 추가하여 소속 학과 교학팀에 제출
3	학과 심사(학장 결재 후 교무팀 제출)
4	재입학사정회의(재입학 2회 이상인 신청자에 한함)
5	최종 허가

4. 유의사항

- 가.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**학생 정원(총 정원)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**합니다.
- 나. 일반계열(의료인양성계열 제외) 여석은 직전 학기 고등교육통계 학부생 원자료(2021년 10월)에 명시된 3,4학년 제적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- 다. **의료인양성계열(의학과, 간호학과, 약학과)의 경우 매년 1학기에 재입학을 실시**하며, 여석은 직전년도 고등교육통계 학부생 원자료(2021년 4월 및 10월)에 명시된 3, 4학년 제적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- 라. 의학과, 약학과의 경우 3,4학년 제적자 0명으로 2022-1학기 재입학을 실시하지 않습니다.
- 마. 법과대학 폐지에 따라, **기존 법과대학 소속 학생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로 재입학을 신청**할 수 있습니다.
- 바. **재입학 신청 횟수가 2회 이상인 자**에 대한 심사는 신청학과의 심사를 거쳐 학장이 추천하고 **별도의 재입학사정회의의 심사**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습니다.
- 사. 재입학 후 **당해 학기는 반드시 등록**해야 하며, 재입학한 자는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합니다.
단, 군입대 휴학 처리를 하지 않아 제적된 자의 경우에는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.
- 아. 군휴학 및 질병휴학을 제외하고는 **재입학 후 첫 학기 휴학이 불가**합니다.

5. 참고사항

- 가. **일반계열의 경우, 학과별 제적자를 기준으로 여석을 산정하지만 각 학과는 재입학 접수 시 계열 전체 여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(정원 내, 정원 외별 여석을 학교 전체에서 활용)**
- 다. 각 학과는 서류전형, 면담, 자체평가 등 교육과정 및 학과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- 라. 심사위원은 소속 학과장 외 2명 내외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함을 권장하나 학과별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습니다.
- 마. 재입학 심사 시 이수 학기 대비 취득학점 부족으로 학년 조정이 필요한 학생은 심사결과표에 학년 조정 계획을 작성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